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695호

시행일자 2019. 9. 6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(집행정지 해제안내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(보건복지부 2018-52호)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3236,3237(2019.9.6.)
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

2. 위와 관련, 일동제약, 구주제약, 한올바이오파마, 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 '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' 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2019. 9. 29.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,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집행정지 해제 품목
- 레녹스정 68.1mg/1정 등 26품목(일동제약,구주제약/ 붙임1 참조)
- 아세로정 0.1g/1정 등 75품목(한올바이오파마,한국팜비오/ 붙임2 참조)

○ 2019. 9. 29.일부터 약가인하 적용

붙임: 1. 대상품목(일동제약,구주제약)
2. 대상품목(한올바이오파마,한국팜비오)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